

[별표 6] <개정 2008.11.26>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제65조 관련)

1. 법 제98조에 따른 과태료

구분	과태료
보험급여비용이 50만원 미만인 금액 경우	보험급여비용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보험급여비용이 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인 경우	보험급여비용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보험급여비용이 2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인 경우	보험급여비용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보험급여비용이 6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인 경우	보험급여비용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보험급여비용이 1,000만원	보험급여비용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
는 금액	
이상인 경우	

비고 : 1. 과태료가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2. 과태료의 계산에 있어서 100원 미만의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2.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

위반행위		근거 법령	과태료
		1회	2회
회 이상		3	
1. 사용자가 법 제6조의2를 위	법 제99조제2	30만원	60만원
100만원			
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항제1호		
거짓으로 신고한 때			
2. 사용자, 세대주, 요양기관,	법 제99조제2	30만원	60만원
100만원			

보험급여를 받은 자 또는 대	항제2호		
행정구단체가 정당한 사유 없			
이 법 제82조제1항·제2항 또			
는 제84조제1항·제3항·제4항			
을 위반하여 서류의 제출, 의			
견의 진술, 신고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한 때 또는 거짓으			
로 진술·신고 또는 보고를 하			
거나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때			
3.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업	법 제99조제1	500만원	500만원
500만원			
무정지처분을 받았거나 업무	항		
정지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자가 법 제85조제4항을 위반			
하여 그 사실을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통			

지하지 아니한 때				
4.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이 법	법 제99조제2	30만원	60만원	
100만원				
제87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항제3호			
때				
5. 법 제88조의2를 위반하여	법 제99조제2	30만원	60만원	
100만원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이 아닌	항제4호			
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				
보험심사평가원 또는 이와 유				
사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건강				
보험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아				
닌 자가 보험계약 또는 보험				
계약의 명칭에 국민건강보험				
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때				

비고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
행위로

과태료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그 기준 적용일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일과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